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유림을 매각, 교환하는 경우 예정가격 결정 시점을 명확히 하고, 국유림 대부료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며, 국유림 공중, 지하 부분의 대부료등 산출 방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동안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 시 시가의 기준시점 명확화(안 제14조)

국유림 매각 또는 교환의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시가의 기준시점을 감정평가 의뢰일로 명확히 규정함

나. 대부료등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안 제21조)

1) 국유림 대부료등 산정 시 토지가격을 실제 이용 상태를 반영하여 산출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2)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의 대부료등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임업 총수입 통계를 적용하는 경우 임업 총수입 통계 중 권역별 통계가 폐지되어 지역별 통계로 변경함(안 제21조제3항제2호)

3)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부등을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체이용저해율을 준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21조제4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을 “경우에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입목·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을 “제42조제1항(전단 및 후단은 제외한다) 각 호, 제2항 및 제3항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격”을 “가격(대부지등이 산림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실제 이용되는 상태의 토지 가격)”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부료등은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권역별”을 “지역별”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대부료등을 산출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대부등을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있거나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u>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u>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u>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① ----- ----- ---- <u>경우에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입목·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u> ----. <u><후단 삭제></u>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u>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② ----- ----- ----- ---- <u>제42조제1항(전단 및 후단은 제외한다) 각 호, 제2항 및 제3항과</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대부료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u>가격에</u>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u>하며,</u>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제21조(대부료등) ① ----- ----- ----- ----- <u>가격(대부지등이 산림 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실제 이용되는 상태의 토지 가격)---</u> <u>부과한다. 이 경우 대부료등은</u>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은 매년 결정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대부료등을 산출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

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1. (생략)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공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

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경인권의 통계

나. 강원도: 강원권의 통계

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충청권의 통계

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라권의 통계

-----.

1. (현행과 같음)

2. -----

----- 지역별 -----

-----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u>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u> <u>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u> <u>경상북도: 경상권의 통계</u> <u><신 설></u> ④ · ⑤ (생 략)	<u><삭 제></u> <u>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u> <u>분을 대부등을 하는 경우의 대</u> <u>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u> <u>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u> <u>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u> <u>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u> <u>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있거나</u> <u>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u> <u>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u> <u>다.</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연 락 처	(042) 481 - 4098